힐스테이트 화순 2차 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변경, 자금관리자 변경 안내(31p, 32p, 44p)

■기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 702 671221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분양대금 납부계좌	೨೧ ೦ ನಟ	212601 04 200555	(A) (C) (C) (C) (C) (C) (C) (C) (C) (C) (C	
발코니 확장공사비		1005-703-671331		발코니 확장공사비	국민은행	213601-04-288555	㈜무궁화신탁	

■기존 ■변경

구분	자금관리자	구분	자금관리자
상호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상호	㈜무궁화신탁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46, 13층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一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역삼동 포스코P&S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3543801	법인등록번호	110111-2867418
(사업자등록번호)	(120-87-07104)	(사업자등록번호)	(120-86-58362)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택유형 해당지역			₹		규제지역여부		
민영	전라남도	화순군 거주자	전라남도 및 광주된	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현	ŀ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	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		병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6.07.(금)	24.06.17.(월)	24.06.18.(화)	24.06.19.(수)	24.06.25.(화)	24.07.01.(월)~ 24.07.07.(일)	24.07.08.(월)~ 24.07.10.(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	공급		일반	일반공급	
<u> </u>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	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필요	_	_	_	
소득 또는 자산기준	- 적용		_	적용	_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 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일반공급	응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 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청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분양사무실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 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0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6.07.(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라남도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 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전라남도 화순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4.06.17.(월)	24.06.18.(화)	24.06.19.(수)	24.06.25.(화)	24.07.01.(월)~ 24.07.07.(일) 24.07.10.(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 (PC·모바일) 청약홈(09: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		• (PC·모바일) 청약홈	 사업주체 분양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 (우산동, 지오빌딩) 	로 315, 6층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입처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 구매금액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텍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화순군 도시과-20525호(2024.06.0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1072번지 일원
-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3~37층 3개동 총 363세대 중 일반분양 55세대

「특별공급 19세대(다자녀가구 5세대. 신혼부부 9세대. 노부모부양 1세대. 생애최초 4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7월 10일 이후
- 준공(사용검사)일 : 2024년 02월 29일
- 공급대상

3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주택공급면적(㎡)		기타 계약	세대별 등	총공급		특별	불공급 세대	내수		일반공급	최하층			
		–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01	084.9814A	84A	84.9814	37.8570	122.8384	54.2356	177.0740	28.5180	18	2	3	-	1	6	12	2
	02	084.6403B	84B	84.6403	37.7010	122.3413	54.0179	176.3592	28.4035	33	3	6	1	3	13	20	1
2024000263	03	113.4526	113	113.4526	32.7330	146.1856	72.1114	218.2970	38.0723	1	-	-	-	-	-	1	-
	04	114.3245	114	114.3245	33.2999	147.6244	72.6656	220.2900	38.3649	3	_	-	_	-	_	3	1
		합 계							55	5	9	1	4	19	36	4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약식표기)	84A	84B	113	114	합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	3	_	_	5
신혼부부 특별공급	3	6	_	_	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_	1	_	_	1
생애최초 특별공급	1	3	_	_	4
합 계	6	13	0	0	1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약식	공급 세대수	동·호	층별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	계약금(10%)	잔금(90%)		
표기		0 ±	0212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Я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내
			2층	1	47,950,000	282,158,000	_	330,108,000	33,010,800	297,097,200
			4층~5층,9층	3	47,950,000	299,905,000	-	347,855,000	34,785,500	313,069,500
		201동 4호	14층	1	47,950,000	314,551,364	-	362,501,364	36,250,136	326,251,228
		201층 4호	18층	1	47,950,000	312,005,000	_	359,955,000	35,995,500	323,959,500
			19층	1	47,950,000	307,005,000	_	354,955,000	35,495,500	319,459,500
			26층	1	47,950,000	319,104,000	-	367,054,000	36,705,400	330,348,600
	18	202동 1호	5층	1	47,950,000	299,905,000	_	347,855,000	34,785,500	313,069,500
84A		202동 4호	2층	1	47,950,000	282,158,000	_	330,108,000	33,010,800	297,097,200
			3층	1	47,950,000	294,257,000	_	342,207,000	34,220,700	307,986,300
			5층	1	47,950,000	299,905,000	_	347,855,000	34,785,500	313,069,500
			21층	1	47,950,000	314,104,000	_	362,054,000	36,205,400	325,848,600
			35층	1	47,950,000	324,752,000	_	372,702,000	37,270,200	335,431,800
		000= 4=	4층	1	47,950,000	299,905,000	_	347,855,000	34,785,500	313,069,500
		203동 4호	5층,7층~8층	3	47,950,000	304,905,000	_	352,855,000	35,285,500	317,569,500
			3층	1	47,828,000	288,819,000	-	336,647,000	33,664,700	302,982,300
			4층~7층,9층	5	47,828,000	299,450,000	_	347,278,000	34,727,800	312,550,200
84B	33	201동 3호	10층~11층, 13층~15층	5	47,828,000	306,538,000	-	354,366,000	35,436,600	318,929,400
			16층,19층	2	47,828,000	311,538,000	_	359,366,000	35,936,600	323,429,400

			25층	1	47,828,000	313,625,000	_	361,453,000	36,145,300	325,307,700
			29층	1	47,828,000	318,625,000	_	366,453,000	36,645,300	329,807,700
		202동 2호	6층	1	47,828,000	299,450,000	_	347,278,000	34,727,800	312,550,200
			2층	1	47,828,000	281,732,000	_	329,560,000	32,956,000	296,604,000
			6층~8층	3	47,828,000	304,450,000	_	352,278,000	35,227,800	317,050,200
		202도 2등	9층	1	47,828,000	299,450,000	_	347,278,000	34,727,800	312,550,200
		202동 3호	10층	1	47,828,000	306,538,000	_	354,366,000	35,436,600	318,929,400
			12층	1	47,828,000	311,538,000	_	359,366,000	35,936,600	323,429,400
			36층	1	47,828,000	324,256,000	_	372,084,000	37,208,400	334,875,600
		203동 2호	5층	1	47,828,000	304,450,000	_	352,278,000	35,227,800	317,050,200
			3층	1	47,828,000	288,819,000	_	336,647,000	33,664,700	302,982,300
			5층	1	47,828,000	304,450,000	_	352,278,000	35,227,800	317,050,200
		203동 3호	6층~8층	3	47,828,000	299,450,000	_	347,278,000	34,727,800	312,550,200
			11층~12층	2	47,828,000	311,538,000	_	359,366,000	35,936,600	323,429,400
			14층	1	47,828,000	306,538,000	_	354,366,000	35,436,600	318,929,400
113	1	201동 2호	6층	1	59,096,000	380,940,909	38,094,091	478,131,000	47,813,100	430,317,900
			3층	1	59,653,000	370,991,818	37,099,182	467,744,000	46,774,400	420,969,600
114	3	201동 2호	6층	1	59,653,000	388,966,364	38,896,636	487,516,000	48,751,600	438,764,400
			35층	1	59,653,000	420,298,182	42,029,818	521,981,000	52,198,100	469,782,900

4 특별공급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I	1						
		구분		처리방	법			
	당첨자빌	할표일이 다른 주택	주택 당첨자발표일 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 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성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 의	#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기절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청약통장 자격요건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7,120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	부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경	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	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	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		
Δ	_	1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라남도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대상자	■ 만19세 미만의 자녀 2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u> </u>		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		'도 화순군) → 기타지역 거:							
	■ ②배점	171(292	- 400	1 /1 (411 X 6 1 6 1/4/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100	71世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2명	15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 납부시포법증포를 현재 현9세 미련의 승규의 사디(대의, 법증자의 포함)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3/11/11/01/0	3	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당첨자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선정방법					가속으도 5년이 성과된 문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10년 이상	20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ᄆᄌᄗᄓᄭ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4)	20	그런 이경 ~ 10년 미년 	15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중국단중시기 중단시(단19세 이중, 미중단시기 본단한 중부 중단으로 참)로서 예중시로 (전라남도)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11 12(3)		1년 이상 ~ 5년 미만	5	(L 13—)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새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주	트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2 신	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저	레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9세대				
76							
구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양	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	l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기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괴	l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	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깐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여	#치금액 이상)한 분·				
	■ 다쳤다 서정 수시	: ①소드구부 → ②수위 → ③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25171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3단계	(35%)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당첨자	4단계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선정방법	427	(15%)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 가 다게벼 나눠	 지느 디오 대체 코크대샤에 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이 있는 경우 군취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 (전라남도 화순군 거주자) 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지	· 마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	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 해당지의	벽 거주자 (전라남도 화순군) →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전라남도 화순군) → 기타지역 거주자(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무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 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4.06.07.(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шо	소득금액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우선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004,510원~	8,248,468원~	8,775,072원~	9,563,283원~	10,351,494원~	11,139,705원~	
신생아일반공급,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8,405,412원~	9,898,161원~	10,530,086원~	11,475,939원~	12,421,793원~	13,367,646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춰고그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비고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부동산 (건물+토지)	무동산 3억3,100만원 금액 단, 아래 경우는 * 「농지법」 제2 농업인과 소유2 * 「초지법」 제2 허가증의 사업3 * 공부상 도로, 극 * 종중소유 토지(제한을 받는 경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라남도 화순	- 군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대상자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비행시	_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	지역 → ②가점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 지역 : 해당지역 거족	F자 (전라남도 화순군)	→ 기타지역 거주자 (전라남도 및 광주광	역시)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	·를 기준으로 당	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	의 기재 오류에 의한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		· · - · · · · · · · · · · · · · · · · ·	872871111	M					
			·							
	<u> </u>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32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①무주택기간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4년 미만	6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12년 이상 ~ 13년 미만	24 26				
	(J)ナナギバゼ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3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당첨자			7년 이상 ~ 8년 미만	16						
		35	0명	5	4명	25				
선정방법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Ø 1 0 1 1 1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3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2				
			2년 이상 ~ 2년 미년 2년 이상 ~ 3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입주자저축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2년 미년	14				
	가입기간	17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자	l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X	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신	·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	명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비고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4-4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 모든 세대구성원(※ (예외) 2024.03. ■ 「주택공급에 관한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아래 '가' 또는 'L - 가. 혼인 중이거나 - 나. 1인 가구는 추첨 * '단독세대'란, 단 60㎡ 이하 주택함 * '단독세대가 아난 ■ 「생애최초 주택 · ■ 입주자모집공고일 * 과거 1년 내에	응 구입하는 분 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련 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 한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보 나'에 해당하는 분 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민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 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서 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단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사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히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분 예치금액 이상) I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도 없는 분) I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당첨자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선정방법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15%)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5단계	무섭증됩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 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전라남도 화순군) → 기타지역 거주자(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 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4.06.07.(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고

4 C 7 U		비율	소득금액					
	소득구분	미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130% 초과	9,105,863원~	10,723,008원~	11,407,593원~	12,432,268원~	13,456,942원~	14,481,61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추첨공급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기 시가표준	액 적용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건축물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u>단독주택</u>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금액 t, 아래 * 「농지함 * 「농지함 * 「초지함 하가증의 * 공부상 * 종중소위 제한을	경우는 제외 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 바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 비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 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	용되고 있는 경우 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5

구분	내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라남도 화순군에 거	주하거나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거주히	h는 만19세 이 d	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대상자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	2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 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	에 가입하여 6개월 이 경	병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예	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	!적 85㎡ 이하 주택	l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	입하여 6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0	폐치금액 이상인	! 분				
ᅯ야투자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	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	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통장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자격요건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	티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함	한 지역		
	전용면적 85㎡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0	베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출	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전라남도 화순군) → 기타지역 거주자(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CI ELTI		7	 !분		가점제	 추첨저			
당첨자 H 전반법			· · · · · · · · · · · · · · · · · · ·		40%	60%			
선정방법			85㎡ 초과		40%				
			00 조파		_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	응급에 관한 규칙」 별표	I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	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①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2	9년 이상 ~ 1	0년 미만	20		
	サナギカゼ	02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9	35	1명	10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3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입주자저축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가입기간	17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718712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메구자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 <i>사</i>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 <i>사</i>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기
①무주택기간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적용기준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의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가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
	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
②부양가족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인정 적용기준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01.T.T.T. T.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주택소유여부 및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6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본인 신청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추가서류	위임시는 제출 생략)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 청약신청 단계0 확인하여 드리는	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민영주택)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6.25.(화) ~ 2024.07.04(목) (10일간) - 조회기간 (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06.25.(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사전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내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장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24.07.01.(월) ~ 24.07.07.(일) [7일간, 10:00 ~ 17:00] ※ 예비입주자의 당첨자 검수일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과 동일하거나 상이할 수 있음)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315, 6층 (우산동, 지오빌딩)

■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07.(금)]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등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등 추가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사전제출 구비서류 (예비입주자 포함)

서류유형

	시큐ㅠ৪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_	견본주택 비치(특별공급신청서의 경우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0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0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공통 서류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 존·비속 배우자	피부양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청약자가 단신부임을 확인해야 하는경우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0	해외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발급내역		
		0	복무확인서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 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다자녀		0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외 불가,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	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I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0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로 인정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등본상 등재된 사실 확인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의 경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i	9우 임신진단서외 불가,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신혼부부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특별공급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세대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는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0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0	공시가격 증명 서류	본인 및 세대원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토지, 주택 등에 대한 공시가격 인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이하 국토교통부" ※ 청약자격상 무주택취급(주공규53조) 되는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 주택 공시가격 ※ 청약자격상 무주택취급(주공규53조) 되는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오피스텔, 상가 : [건물분] 홍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조회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토지분] 국토교통부 → 개별공시지가 ※ 토지 : 국토교통부 → 개별공시지가				
		0	재산세 납부내역	본인 및 세대원	기능기 부동산으로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 불가한 경우 재산세 납부내역(정부24 또는 인근 행정복지센터)과 상기 해당하는 공시가격 증명서류				
노부모 부양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 존·비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 포함하여 발급),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특별공급		0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기	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	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0		등이고계 조 머 / I	본인	혼인중인자.청약자격확인				
	0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혼인중에 있지 않은 청약 신청자가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로 청약 신청 자격을 증명하려는 경우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 이상 세대원 전체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디 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	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생애최초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내0	∥ 소득세 납부 서류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특별공급			53114.5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0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근로자	· 재직증명서 원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 해당 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 세무서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소득산정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증명서로 발급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등본상 등재된 사실 확인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외 불가,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세대원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0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에 해당하는 물건지에 대한 토지, 주택 등에 대한 공시기 →"이하 국토교통부" ※ 청약자격상 무주택취급(주공규53조) 되는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 ※ 청약자격상 무주택취급(주공규53조) 되는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 ※ 오피스텔, 상가 : [건물분]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 국토교통부 → 개별공시지가		※ 청약자격상 무주택취급(주공규53조) 되는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 주택 공시가격 ※ 청약자격상 무주택취급(주공규53조) 되는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오피스텔, 상가 : [건물분]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시가조회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토지분]			
		0	재산세 납부내역	본인 및 세대원	미등기 부동산으로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 불가한 경우 재산세 납부내역(정부24 또는 인근 행정복지센터)과 상기 해당하는 공시가격 증명서류
	0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3자	0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대리인 신청시	0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추가사항	0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인장	대리인	대리인 도장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분양사무실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위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 생애최초특별공급 이전의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중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내에 소득세 납부 서류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서 등 제출서류 발급시 요청하여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상기 제출서류 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추후, 계약 시 계약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재직증명서 원본(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근로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전직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 재직증명서 원본 -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증, 위촉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자영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 미가입자 :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예정 신고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업자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명세서(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세무서 -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급여명세표 - 위촉증명서, 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일용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원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당해년도 및 이전기간)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원본(직인날인) -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 명세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함께 제출)	- 해당직장 - 세무서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접수장소 - 세무서

-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비사업자확인각서를 제출한자 중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 등록상태를 조회하여 사업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심사방법(소득증빙 서류)에서 정하는 이외에 기타 예외적인 경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11조제6항에 의거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11조제6항)

예외 사항	소득 산정 방법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이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은 제출하여야 함)
직업이 프리랜서 또는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 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인증서류

서류 구분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및 세무서	
717015 N.2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입증 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 증명	- 해당직장 및 세무서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9조제6항)

예외 사항	소득 산정 방법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이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은 제출하여야 함)
직업이 프리랜서 또는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 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일반공급 사전제출 구비서류 (예비입주자 포함)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 기준	비고
	서약서	-	견본주택 비치(특별공급신청서의 경우 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필수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저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 가점내용 확인서	본인	견본주택 비치
추가 (해당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직계 존·비속	피부양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청약자가 단신부임임을확인해야하는경우

		배우자	※ 기록대조일-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해외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취업 사업비자발급내역
	복무확인서	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10년 이상 명시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 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피부양 직계 비속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 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기그런게66시	피부양 직계 비속	배우자의 전혼자녀를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경우(신청자와 동일등본에 한함)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일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THOTA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제3자 대리인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신청시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추가사항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인장 대리		대리인 도장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분양사무실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계약 시 위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서 등 제출서류 발급시 요청하여 "상세"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개인별 상황에 따라 상기 제출서류 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추후, 계약 시 계약구비서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주택소유0	i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제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지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청장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간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교면 단독주택 다. 송유지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 된다. 송유지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 된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 된다. 소유자의 있는 경우 등에 관한 법률 이 관한 법률 이 가격한 경우 기원 이내에 이를 지본한 경우 1세 위치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속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적의 일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립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급미터 이하엄 주택 또는 분안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6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따라 기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안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6세 이상의 직계존속에 바꾸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안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부모부장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가급체의 부당가속 인성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로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속에서 제외 함 8. 무하가건됨(품전) 「건축법 (법률 제7696 권 건축법 일부계정법을 맞게점법을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초로 및 제상조에 따라 결축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상리한 경우 8. 무하가건됨(품전) 「건축법 (법률 제7696 권 건축된 일부계정법을 및 개점점법을 개점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소로 및 제상조에 따라 결축하고 있는 용구에 요한 건축인 결을 말한다)을 중위하고 있는 경우(에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작업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리신청자가 숙한 세대가 소향 지가주락들을 같은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면 작업을 모르고 제보아 본관관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당수로 경우) 보안 규칙을 발표가 제외을 가는 주택을 건택한 건물임을 준용하고 있는 경우(에 당수로 경우) 전부 표보 기관로 제상으로 기관을 가는 경우이 연구 주택을 건축되었다고 있는 경우, 다면, 그 주택이 다음 각목이 나는 자건으로 제외 및 구적적인 165 제곱리에 환란 규칙을 경우에 참당하는 경우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목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종족하는 경우 12. 우주목세대구성형인 암차인이 함께 가격하고 있는 암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종족하는 경우 12. 우주목에 대다 건축이 함께 가격하고 있는 암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종족하는 경우 12. 우주목세대구성형인 암차인이 함께 가격하고 있는 암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중하는 경우 지원이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호 에서 같다 등록 취득성이 함께 가격하고 있는 암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등에 하는 수도을 입한다. 이하 시작 기관

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

8 당첨자 계약 체결

■ 일정 및 계약장소

구분	일정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24.07.08.(월) ~ 24.07.10.(수) [3일간, 10:00 ~ 16:00]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315, 6층 (우산동, 지오빌딩)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납부계좌	국민은행	213601-04-288555	㈜무궁화신탁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201동 204호 '홍길동': 2010204홍길동

- 계약금. 잔금 등 모든 분양대금은 상기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분양사무실 현금수납 불가)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 201동 204호 '홍길동'→2010204홍길동)
-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잔금 납부계좌는 상기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동일합니다.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분양사무실에서 현장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람)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 상의 주소지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는 각 분양대금의 납부기일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른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만일, 분양대금을 과오납할 경우, 사업주체로 환불신청서(사업주체양식) 및 구비서류(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후 환불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타입	금액	계약금(10%)	잔 금(90%)
T E	다입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내
	84A	33,640,000	3,364,000	30,276,000
	84B	36,441,000	3,644,100	32,796,900
발코니 확장공사비	113	37,942,000	3,794,200	34,147,800
	114	52,275,000	5,227,500	47,047,5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국민은행	213601-04-288555	㈜무궁화신탁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ex) 201동 204호 '홍길동': 2010204홍길동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초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입금증은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에 대한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잔금 납부일에 지정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201동 204호 '홍길동' →2010204홍길동)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시공하였습니다.
- 본 단지는 준공 후 분양으로 기본형(비확장) 선택 또는 실별, 위치별로 부분 확장 선택은 불가한 전세대 확장형으로 확장시 외부 샤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분양아파트 공급금액과 별도로써.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추후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설계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분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일부구간 단창)로 설치되었습니다.
-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요청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변경 시공시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 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헤드,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 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수전류, 배관류, 배수트랩 등은 동파에 유의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서류	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본인 계약시	0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0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외				
	0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0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본인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0		인감증명서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0		인감도장	본인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0		위임장	본인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0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0		인장	대리인	대리인 도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분양사무실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청약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 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및 그 세대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는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 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 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 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유의사항

■ 본 단지는 준공 후 분양으로 사용검사(2024.02.29.)가 완료되었으며 반드시 분양사무실 및 단지를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9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현재 설치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 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또는 당사의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분양사무실 내 모형 등의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로 설치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 (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고, 별도의 구상금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계약면적 외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 주장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단지를 직접방문하여, 평면도, 배치도, 조감도, 투시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분양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주변 도로여건,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 및 별도 분양안내서, 평면도 배치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 (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세대내부 붙박이장류(신발장, 주방장, 붙박이장, 욕실장, 욕실거울 후면 등) 배면 및 접해져 있는 벽, 바닥, 천장 등의 최종 마감자재(지정마루판, 벽지 등)는 설치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 아파트와 관련된 분양 홍보물상 조감도 및 모형도 등의 아파트 입면은 실시공시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계약 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 및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는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소수점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정산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공유지분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 및 관련 홍보물에 표시된 주택 면적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레벨차에 의해 각 동별 저층부 석재마감 구간이 상이하니 이에 대해 확인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 하기로 하되,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입주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입주시 시 이점 유의하 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합니다.
- 본 공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홍보물(카탈로그, 공급안내 및 분양자료 등)

- 각종 광고 홍보물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분양사무실 사인물, 홈페이지, 카탈로그(공급안내)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분양 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 하기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제작 시점, 여건 변화 반영 정도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과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니 샘플주택 또는 분양사무실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분양자료, 공급안내 등)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

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합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정산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장구)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아파트의 배치 및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분양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마감 자재리스트 등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시 비확장되는 안방 발코니,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내외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 스스로 환기 등의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단열재 설치 요구 및 결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침실1 발코니 및 주방 발코니의 경우 발코니 확장여부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입니다.
- 세대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서 주방렌지후드 상부까지는 천장 속에 가스배관이 매립되므로 주방천장에 가스누설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등 고정 설치물 설치 부위의 바닥, 벽, 천장 등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신발장. 침실 붙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랍니다..
- 욕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공장생산 자재의 (예: 무늬재, 천연석재, 타일 등) 천연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내된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간섭 및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외기에 직접 면하고 있으므로 냉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일부 해당세대는 배치상 측벽세대 또는 간벽세대의 외벽 단열재 시공유무에 따라 실외기실, 대피공간, 안방발코니의 가로 폭과 바닥면적, 실외기실 창호 크기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미확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승강기에 면한 단위세대의 경우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기계작동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실시공된 세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면적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싱크 하부 장에는 난방용 분배기 및 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동일 세대 타입이어도 일부세대는 실외기실 공간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 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는 다용도실 및 실외기실 상부에는 특별한 마감이 없이 노출시공 됩니다.
- 세대 환기 설비는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세대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후드렌지 상부의 가구장내부에는 법적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바 이로 인해 가구 폭 및 일구 공간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보일러가 설치되며, 별도의 보일러실이 구획되지 않아 보일러 가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실외기, 우수/오수(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에 별도 구획된 대피공간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 전 현장 및 분양사무실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급수계량기, 가스계량기 및 전기계량기는 원격검침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강화대리석, 인조대리석, 도배지, 시트지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상하부세대의 확장으로 인하여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바닥과 천장에 단열재가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외부 창 한쪽 창에 방충망이 설치되며 대피공간은 피난을 위한 공간으로 별도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설립 후 별도의 인터넷회선(단독IP)을 설치하여, 홈네트워크와 연동하여 일괄소등 등 원격제어가 가능하나 해당 홈네트워크사의 스마트 전용어플 및 세대인증이 필요하고 휴대폰 제어시는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홀

- 승강기 홀(공용홀)은 각 세대 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승강기 홀(공용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유무 및 창호 크기, 개폐유무 또는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환기 및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승강기 홀(공용홀) 설치로 사생활 간섭 및 인접세대의 승강기 소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분양사무실 또는 현장을 방문 하시고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 / 내부 여건

- ※ 다음의 설계와 관련한 내부여건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 위치는 도로소음에 직접 노출된 지역으로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입주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하여 일체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서측 도로의 빈번한 차량통행 등으로 인해 소음, 분진, 야간 및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부지, 현장여건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남측 인접지역 공동주택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후에도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부지 외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주체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예정)자는 개발 계획, 실시계획 승인 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 (변경내용 포함), 건축규제 사항,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의 협의 내용 (변경 및 재협의 내용 포함), 에너지사용계획, 건축·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인허가 변경계획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3층~10층 세대의 대피공간에 법정 소방시설인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내 202동 및 203동 인근 지하에는 펌프실, 저수조실 등이 위치해 있으며 지하시설물의 배기구가 형성되며, 인접한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진동,냄새,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측면 및 전.후면에는 지하시설물의 배기구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인접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상의 모든 DA(주차장 및 발전기실, 기계실 환기용, 제연용)는 소음,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인접 동 청약자 또는 계약 예정자 께서는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 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근린생활시설이 인접해 있는 202동~203동 일부 세대는 지상, 옥상 또는 인근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및 기타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열기 및 배기구에 따른 냄새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공동시설, 저수조, 빗물처리시설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상수 급수펌프, 소방, 전기 시스템 및 기타 배관 등 일부 장비가 근린생활시설과 공용으로 사용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이 인접해 있는 동 하부층의 일부 세대는 지상, 또는 인근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및 기타 장비(보일러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열기 및 배기구에 따른 냄새 등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동~203동 저층 세대 일부는 근린생활시설이 접해있어 방범에 취약하거나 소음, 진동, 사생활권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201동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202동 부대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203동 부대복리시설(독서실)에 인접한 해당 동 저층 세대 일부는 방범에 취약하거나 소음, 진동, 사생활권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일부세대는 근린생활시설로 인한 소음 발생, 상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일조권, 조망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호수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상가 영업제한, 용도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은 결로 저감 장비(제습기 등)가 설치될 예정이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 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옥상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일부 세대의 조망 및 수면장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공용홀 및 전용면적(각 점포) 내 천장 속에는 공동사용을 위한 설비 가스배관 및 위생, 공조 배관 등의 시설물이 관통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훼손 및 점검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설치는 지양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분양사무실 및 현장에 방문하시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동·호수에 따라 동일평형이나 홍보물 및 각종CG와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 아트월 설치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 등 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분양사무실 및 현장에 방문하시어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 및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 세대는 보행자 통로, 산책로, 조경 수목, 조명, 탑라이트, D.A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및 빛, 쓰레기보관소, 자전거 보관소 등으로 인하여 조망, 일조,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에 포함된 시설물과 기부채납 되지 않는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영구배수공법으로 인한 유지·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배수펌프 가동 전기세 및 시관로 유출 하수도세 등)
- 시공중 시설물(관로공사, 영구벽체, 교통안전시설물 등)공사로 인해 발행하는 도로점용료 등
- 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 실외기실 창호의 가로 폭이 측벽세대인 경우와 세대 간벽세대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분양사무실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확인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발전 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 권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필로티, 제연휀룸,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외부계단 및 외부 엘리베이터,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분양사무실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단지 배치상 동일 형별(평형) 아파트라도 동과 라인에 따라 조망되는 전경이 다르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합니다.
- 본 단지 남측에 입주 예정인 단지로 인하여 단지 주동(201동 ~ 203동)은 향후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조망되는 전경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식재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부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출입구 및 단지 내 상가에 인접 동은 차량 진출입에 따른 소음 발생 및 불빛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장애인 통행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협의 사항에 따라 시설물 및 형태,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 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PIT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사생활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CCTV설비는 방범기능 외 입주자 편의를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운동시설(헬스장등)설치 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도열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승강기 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릅니다.
- 본 아파트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각동 주출입구의 형태 및 크기, 진입방식 등은 변경될 수 있고,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내력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 연결된 층수 및 연결통로의 길이와 형태는 동별로 상이하니 계약 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시설(아파트)과 근린생활시설의 주차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며, 주차장 진출입 및 이용 동선으로 인해 주변 도로가 혼잡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주차공간은 지하 1층에 별도 조닝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한 생활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 구획은 각 동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주차 대수가 일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구획에서 장애인 주차장 이용을 위한 거리가 상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양사무실 및 현장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 및 지상주차장과 주동은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소음, 분진, 매연, 램프진출입 경고음 및 진출입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한 불편함 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승강기 홀 상부에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지역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지하층 특성상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환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7m 이내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5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습니다.
- 단위세대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공동현관 원패스 시스템의 경우 일부 스마트폰은 OS정책에 따라 연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기본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연동)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MMI, Modified Mericali Intensity Scale) VII- 0.213g 입니다.
- 주차 위치 저장 기능은 사용자가 스마트키 또는 스마트폰 APP 활성화 후 위치 저장 버튼을 작동하여야 합니다.
- 월패드의 전화 수신 기능은 국선 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Hi-oT 및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Hi-oT 서비스와 제휴된 IoT 가전기기에 한하며, 연동하기 위한 세대 내부 무선 WiFi 및 무선 AP는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입주 시기 정책에 따라 IoT 제휴사는 변경될 수 있음.)
- Hi-oT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포털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Hi-oT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약 6개월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교시설 관련 유의사항

-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 등 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결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수용계획 등은 해당 관청의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공동주택 건설로 유입되는 학생들의 배치 대상 학교는 화순초, 화순중, 화순제일중 입니다. (관할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소음, 일조 및 민원사항

- 지하 주차장 입구가 위치한 해당 동 라인의 경우 저층 세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분진,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자동차 전조등 및 보행자에 의해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휀룸 급배기구(D/A)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근린생활시설(상가), 산책로 등 인접세대에 소음, 세대간섭, 조명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사무실 또는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청약.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를 위한 시설물(D/A)이 각 동 주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 보관소, 조경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소음,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설비 환기를 위한 환기구(D/A)가 일부 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학교인접 등),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근접한 세대는 승강기 소음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확인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오수처리설비(정화조설비, 근린생활시설포함)가 설치된 인접한 세대에서는 소음, 진동, 냄새, 조망권,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계약체결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위치 변경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분양사무실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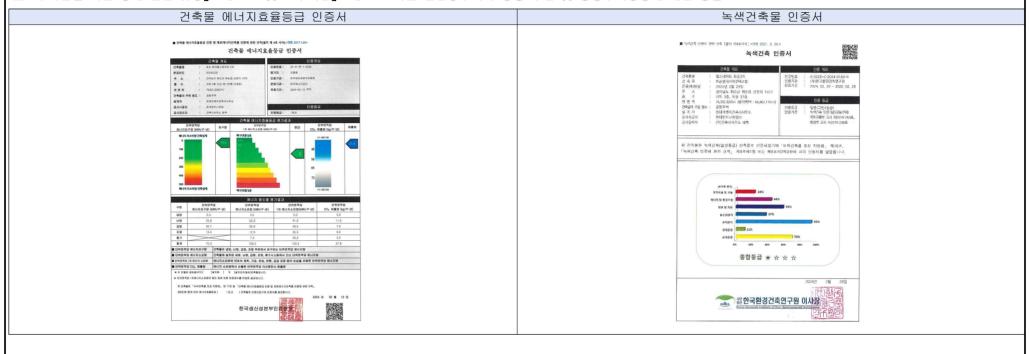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통보,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하나, 본 아파트는 준공 후 분양 아파트로 입주예정자 입주지정(예정)일에 따른 별도의 입주자 사전방문 기간을 두어 입주자 사전방문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자 사전방문 후속조치(하자보수)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입주지정(예정)일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시기: 2024년 07월 10일 이후 / 준공(사용검사)일: 2024년 02월 29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1항에 의거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된 입주(예정)일을 고려하여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가 가능한 날을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해야되나, 본 아파트는 준공 후 분양 아파트로 공급계약 체결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계약자에 통보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에 의거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 이후로부터 최소 45일을 입주지정기간으로 설정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을 초과할 경우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연7.48% 연체료를 부과합니다.
- 각 계약자별 입주지정기간이 경과될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 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 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도서관,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 GX룸), 경비실, 주차장 등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자금관리자
상호	화순현대지역주택조합	현대엔지니어링(주)	㈜무궁화신탁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315, 6층 (우산동, 지오빌딩)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현대빌딩)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P&S타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506-32-72492)	110111-2153015 (101-81-66755)	110111-2867418 (120-86-58362)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 및 통신감리
감리업체	(자)건축사사무소 태백	㈜지티엘이엔지	유한회사 이에프
감리금액	1,999,769,200원	538,501,548원	555,000,000원

■ 분양관련문의

대표번호	분양 사무실 위치	운영시간
062-522-2207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315, 6층 (우산동, 지오빌딩)	10:00 ~ 17:00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공급신청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 ※ 본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